

[사 건 명] 행심 2019 - 90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급교체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피청구인이 2019. 4.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4.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급교체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편입학한 학생으로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친하게 지내오던 중 청구인의 간지럼 태우기, OOO 치기 등의 행동과 성 관련 이야기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이후 둘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나. 2019. 3. 18. 전공교사와 피해학생의 상담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청구인 측이 2019. 4. 2. 117에 신고하여 경찰조사가 진행, 피청구인은 2019. 4. 9.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다. 피청구인은 2019. 4.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고 함.)를 개최하여,
- 라. 2019. 4. 11.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 조치하였다
- 마. 2019. 6.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학폭위시 피청구인은 신분노출의 위험성만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크게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질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인 측을 안심시켰고, 피해학생 측도 학폭위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도 참석하지 말고 서면으로 사실 확인서 정도로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학폭위에서는 이 사건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진술서 내지 사실 확인서를 바탕으로,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전문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 조치결과를 산출하였다.

나. 또한 학폭위에서 ‘학급교체’ 라는 중한 조치를 결정하였다면, 근거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위 조치를 요청하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사후적이더라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마땅하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등 근거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결여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피해학생은 청구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불안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실제로 피해학생은 2018. 초경부터 실기레슨교사로부터 질책을 받으면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 라. 청구인은 피해학생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였으나, 새벽 1시가 넘어도 피해학생의 전화를 받아줘야 하고, 수시로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머리를 때리는 등 친구관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고, 피해학생은 2018. 5~6월경 새벽 12시~1시경 청구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OO에 대해 궁금한 것 없냐”, “무엇이든 물어봐라 궁금한 것 없냐, 다 말해주겠다” 라고 하는 등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피해학생이 서슴없이 성적 농담을 하자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서 웬만하면 대화를 피하려고 하였고 점차 피해학생을 멀리하였다.
- 마. 2018. 9월경 피해학생이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 이후 청구인이 피해학생과 친구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학생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이는 피해학생의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6개월이 지난 2019. 3월 경 느닷없이 이 사건 학폭위를 신청한 의도가 청구인에 대한 반발심과 원망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바.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OO을 만진 사실이 절대 없으며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사실확인 조사 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으며, 만일 그러한 피해를 당했다면 그 당시 학폭위 또는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응이라 할 것이다.
- 사. 피해학생 역시 학교 내 또는 하갯길에 15회 이상 스스럼없이 청구인의 OOO를 손으로 치는 등 장난을 많이 하였으며, 또한 피해학생을 청구인의 무릎에 강제로 앉혔다는 주장도 2018년 여름, 피해학생이

같은 반 친구인 박**과 함께 청구인의 집에 와서 컴퓨터게임을 하고 레슬링 자세를 취하면서 서로 장난으로 때리고 웃기도 하고 놀았으며, 피해학생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청구인이 그대로 피해학생이 앉아있는 의자에 살짝 기대어 게임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의 무릎에 피해학생을 강제로 앉힌 사실이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두 학생이 싸운 바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아.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상당부분은 거짓된 진술이며, 설령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친했던 친구관계에서 어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학급교체 등 중한 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고등학교 0학년인 청구인은 ****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자. 청구인 또한 피해학생을 상대로 성추행 및 폭행 등을 이유로 학폭위를 개최하였고 피해학생도 가해학생 처분을 받았으나 비슷한 수준의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학생은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의 가벼운 처분만 내려졌으며, 처분결과를 비교해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중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차. 청구인은 행정심판에서 학급교체 처분을 취소 받더라도 다시 원래 반으로 복귀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며, 또한 4호, 5호, 6호 감경처분을 받는 것은 7호 처분을 받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욱 무거운 처분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피청구인은 관련 학생들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면담 및 서면진술과 전화상담 등을 하였으며, 학폭위 개최 시 출석의사를 확인하였으나 피해 학생 측이 불참한다고 하여 청구인측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보호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관련자료(학생 및 보호자 서면진술)를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 나. 피해학생은 정신과 진료를 그 전에도 가끔 받아왔으나 사안발생 후 심한 불안 상태를 보였으며, 공황장애, 구토 등 증세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학급교체 이후 많이 안정된 상황이다.
- 다. 청구인도 성적농담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피해학생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그런 진술이나 의견을 말한 적이 없고 피해학생이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하였다.
- 라.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OO을 만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학생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피해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으며, 목격학생들의 진술은 충분히 청취하였고 학폭위 회의 시 위원들이 목격자 확인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를 확인하였다.
- 마. 피해학생이 청구인에 대한 성추행 사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처리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등 및 증거자료,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8년 4월경부터 9월경까지 피해학생에게 간지럼 태우기, 000치기 등의 행동과 성관련 이야기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성적추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청구인이 2018년 4월경부터 9월경까지 피해학생에게 간지럼 태우기, 000치기 등의 행동과 성관련 이야기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이나, 사건당시 청구인 역시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확인되며, 사건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

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중 ‘학급교체처분’은 청구인이 행한 학교폭력의 행위태양 및 그 결과에 비하여 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학급교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학급교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성정도가 다소 부족한 점,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갈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점,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에 대한 서면사과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청구인 및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4시간) 이수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학급교체 처분’만을 취소하도록 한다.

다. 결론 : 일부처분 취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학급교체 처분’은 청구인의 행위태양 및 그 결과에 비하여 형평 및 비례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에 대한 서면사과 및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청구인 및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이수 처분’ 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참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학급교체처분이 집행되었으며, 위와 같이 ‘학급교체 처분’ 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원상회복을 원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과 피해자,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안정된 학교생활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피청구인은 가능하다면 위 원상회복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처분을 변경하여 재결한다.